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 내용 안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20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5. 13 ~ 6. 2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Tel.02-2110-5474)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www.mtr.or.kr](http://www.mtr.or.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되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가. 가. 송전·배전·구역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나. 2003년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독립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함.
-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b>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b>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b> ----- ----- ----- -----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51조(부담금)</b>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p>	<p><b>제51조(부담금)</b>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p>

**법 령 정**  
ACT INFORMATI

현 행	개 정 안
<p>을 직접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 ③(생략)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 ⑥(생략)</p> <p>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생략)     &lt;신 설&gt;</p> <p>    &lt;신 설&gt;</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자가생산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3.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부담금 징수대상자의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⑤-----제3항 ----- ----- ----- ⑥ ~ ⑦(현행과 같음)</p> <p>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징수사무를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입법예고 안내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추가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10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5. 6 ~ 5. 19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Tel.02-2110-5474)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www.moads.go.kr](http://www.moads.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 입법예고 주요내용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7조(가산금)</b>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부담금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p> <p>2. 부담금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p>	<p><b>제37조(가산금)</b>-----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1.-----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월의 월력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하는 금액</p> <p>2.----- 처음 1월은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1월까지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월의 월력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각각 합산하여 정하는 금액</p>
<p>〈신 설〉</p>	<p><b>부 칙</b></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법령정**  
ACT INFORMAT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입법예고 내용 안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66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5. 9 ~ 5. 19
- 관련문의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Tel.02-3703-4552)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 <http://www.mca.go.kr> /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령 정보 INFORMATION

### 2. 적용대상

- 가.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며,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 근무시간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함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통보제로 조정함
- 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매 생리기의 보건휴가는 무급화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휴가 중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휴가만 인정하되, 일수를 일부 축소하여 조정함
- 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둠

〈별 첨〉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대상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내용 안내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5-23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5. 6 ~ 5. 26
- 관련문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Tel.02-3703-5247)
-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 [www.nema.go.kr](http://www.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법령

##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기사업법령 또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 중복점검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경우 정밀소방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은 그 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을 집행함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법

- 가. 종전에는 연면적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정함
- 나.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사업법령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5조(소방점검)</b> ①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 관서,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p>	<p><b>제15조(소방점검)</b>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소방점검외에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시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p> <p>④ · ⑤(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p> <p>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p> <p>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외에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을 받아야 한다</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풍 랑

한 물결 막 지나면 한 물결 생기더니  
고요한 밤 바람 자자 물결 겨우 잔잔쿠나.  
항하(恒河)의 모래 같은 욕심은 끝도 없어  
그 가운데 심분 맑음 얻기가 어렵구나.

〈좋은생각〉

**! 령 정 보**  
IT INFORMATION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법률 제7513호
- 공포일자 : 2005. 5. 26
- 시행일자 : 2006. 8. 26
- 관련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02-504-9051/2)  
[법제처 <http://www.lrdeg.go.kr/>/최근개정법령]

## 1. 개정의 취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공여 금지(제38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제12호 신설)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령정보  
ACT INFORMATICS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8822호
- 공포일자 : 2005. 5. 7
- 시행일자 : 2005. 6. 7
- 관련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02-504-9051/2)

[법제처 <http://www.law.go.kr/>/최근개정법령]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2004년 8월 및 9월에 각각 폐지되어 부적격·부실업체가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한 요건을 종전과 같이 다시 신설하는 한편,

전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령 정 보  
IT INFORMATION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 공포번호 : 법률 제7511호
- 공포일자 : 2005. 5. 26
- 시행일자 : 2005. 5. 26  
(단,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관련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국건축과(02-504-9139)

[법제처 <http://www.law.go.kr/>/최근개정법령]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법률 제7510호
- 공포일자 : 2005. 5. 26
- 시행일자 : 2005. 5. 26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02-2110-5403)  
[법제처 <http://www.moleg.go.kr>/최근개정법령]

### 목적과 중요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법령정보  
ACT INFORMAT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 공포번호 : 법률 제7508호
- 공포일자 : 2005. 5. 26
- 시행일자 : 2005. 8. 26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02-2110-5474)  
[법제처 <http://www.moleg.go.kr>/최근개정법령]

### 목적과 중요성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과 전기설비 점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 등의 업무를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 완료 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령 정 보  
INFORMATION

현 행	개 정 안
<p><b>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b>                      ① ~ ④ (생 략)                      ⑤ 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도지사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p> <p><b>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b> (생 략)</p>	<p><b>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b>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                      -----                      -----요청하고 그 개선 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 ⑩ (현행과 같음)</p> <p><b>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b> ①(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②「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p>
<p><u>〈신설〉</u></p>	<p>③안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b>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への 출입)</b> ①(생략)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⑤(생략)</p>	<p><b>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への 출입)</b>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                  ④·⑤(현행과 같음)</p>
<p><b>제96조의2 (보고)</b>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p>	<p><b>제96조의2 (보고)</b> ①-----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②(현행과 같음)</p>

**법령정보**  
 ACT INFORMATICS

현행	개정안
<p><b>제108조 (과태료)</b>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생략)</p> <p>1의2.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p> <p>1의3. ~ 3.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 2. (생략)</p> <p>3. 제18조제2항 또는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4. ~ 8. (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⑥ (생략)</p>	<p><b>제108조(과태료)</b>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시장·군수·구청장----- -----</p> <p>1의3.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 -----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③-----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p> <p>④----- ----- -----부과권자----- -----</p> <p>⑤----- -----부과권자----- ----- -----</p> <p>⑥ (현행과 같음)</p>

! 령 정 보  
IT INFORMATION

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2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3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4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5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6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7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8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2.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3.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4.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5.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6.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7.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8.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99.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100.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산업자원부령 제279호
- 공포일자 : 2005. 5. 17
- 시행일자 : 2005. 5. 18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02-2110-5483)  
[법제처 <http://www.moleg.go.kr>/최근개정법령]

원자력발전소의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위하여 종전에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던 "원자력 발전소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를 과학기술부가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실시하는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에 대한 규정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각각 삭제하고,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총당금의 산정기준을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전기사업법 시행규칙</b>	<b>전기사업법 시행규칙</b>
<b>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b>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b>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b> ①----- ----- ----- ----- -----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b>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b>	<b>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b>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8840호

□ 공포일자 : 2005. 5. 26

□ 시행일자 : 2005. 5. 26

□ 관련문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02-3703-5243)

[법제처 <http://www.law.go.kr>/최근개정법령]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의 제조소등을 제외하여 제조소등 설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법령정  
ACT INFORMAT

## 가. 제조소등의 중복선임 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제12조 및 별표 6)

- (1)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소등 설치자의 고용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2) 모든 위험물제조소와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안전관리자를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선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자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확대함.
-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소등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제조소등을 제외( 제15조)

- (1)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체계를 정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범위에서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제조소등을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2)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 및 규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제조소등에 대하여 예방규정 작성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방규정 작성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기업활동상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작업형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 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같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적용례) (생략)</p> <p>〈신설〉</p>	<p>제8조(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같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용접기능장·금형제작기능장·판금제관기능장·배관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8805호
- 공포일자 : 2005. 4. 27
- 시행일자 : 2005. 4. 27
- 관련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02-503-9742)

[법제처 <http://www.moleg.go.kr/>최근개정법령]

### 주요내용과 주의사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